

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중 「자율신청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의 수요 반영과 품목 지원의 균형을 위해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신청이 가능한 「자율신청품목*」을 확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현장(40001~9)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참고2]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참고2]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함)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예산) 고위험개선 전체 예산(242.4억원) 중 일선기관별 재원 한도 내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선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한도)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②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③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공단 판단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준용

□ **(지원품목)**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1.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방안(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2. 지원불가 제품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한정하며,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보호구 등)은 신청불가 ※ 관리품목*(전동지게차), 폭염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 등)**은 금번 공모와 별개로 별도의 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 예정 * (관리품목)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으로써 별도 공모 예정 ** (폭염예방설비)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품목인 이동식에어컨 등은 별도 공모 예정 3.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일 것 4. 고위험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인 경우,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5.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5건 등)로 결정금액을 산정하되, 투자완료확인(요청)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 ※ 소요(견적)금액 500만원 이상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필수 제출 소요(견적)금액 500만원 미만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원칙,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5건) 등으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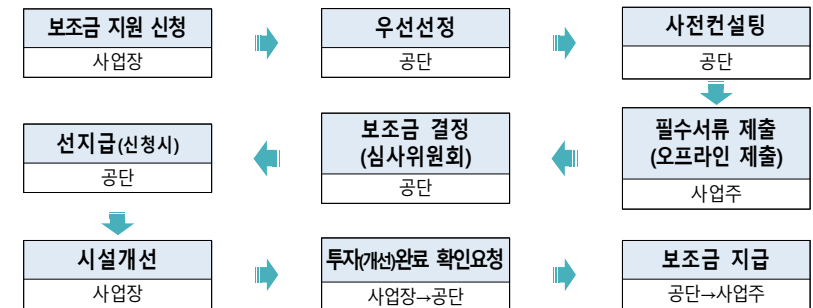
□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참고]

※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항목별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점수 부여

□ **(유의사항)**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 시에만 지원이 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 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 **(지원절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3. 28.(목) 15:00 ~ 4. 30.(화) 15:00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제작·판매업체 대리신청 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온라인 신청 매뉴얼 : 해당 공지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 명으로 서명**(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조치)
- ※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①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서식1]
②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서식2]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④ 견적서	
⑤ 제품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카탈로그, 설명서) 등: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⑥ 자율신청품목 안전 인증(확인)서 사본	해당시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참고2]	해당시
⑧ 우선지원 선정 증빙자료(강소기업, 일터혁신 우수기업 등)	해당시

- ※ ③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컨설팅 후 추가 제출서류)** 컨설팅 후 다음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 ※ 컨설팅 후 추가 제출서류는 전산시스템 상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함

사전컨설팅 후 추가 제출서류	비고
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5건 등)	
⑩ 사업자등록증	
⑪ 추가 요청 증빙자료	해당시

□ **(신청문의)**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6. 선금급 지급(신청 시)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주가 지원품목의 신속한 구입·설치를 위해서 **보조금 결정금액의 70% 이내로 선금급을 신청하면 선금급을 지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서식3]
②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③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5건(양산품인 경우) 또는 원가계산전문기관 발행 원가계산서(공사품인 경우)	
④ 지급보증보험 증권 - 보험기간: 약정일(선지급 요청일 이전날짜일 것) ~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가입금액: 소요·판단금액 전체	

7.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 [중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신속한 개선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사례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완료 시 제출서류		비고
①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		
②-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물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②-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지급보증보험증권		[참고3]
⑥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참고4]
⑦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⑧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⑨ 품목별「고위험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⑥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보조결정)금액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 (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⑥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이상)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8.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 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9. 취소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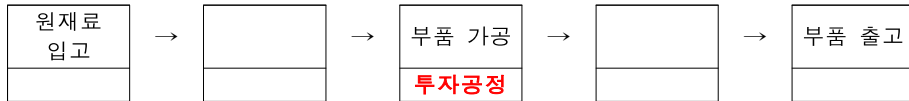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그 밖에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품목(100만원이상)의 A/S 품질 보증을 위하여, 제작·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3년2개월) 제출[참고4]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판매업체명(연락처)
 -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 사업장 현황

○ 공정분류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원재료(금속)를 자동차부품으로 가공하여 출고

2. 자율신청품목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탁상용 연삭기를 방호덮개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여 작업 중
(자율안전확인미신고 제품)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 점검표

○ 투자 공정명 : 자동차부품 가공

재해유형				현실태 및 위험요인	확인결과		개선계획
끼임	떨어짐	부딪힘	기타		적정	보완	
☐	☐	☐	☐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	☐	
☐	☐	☐	☐ []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	☐	☐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	☐	
☐	☐	☐	☐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	☐	☐ []	인화성 물질 취급과정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	
☐	☐	☐	☐ []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	☐	
☐	☐	☐	☐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	☐	
☐	☐	☐	☒ [물체에 맞음]	기타 위험[연삭기 슛돌 비래에 의한 맞음]	☐	☒	방호덮개가 설치된 연삭기 사용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힘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설비 사진1	설비 사진2
설비 사진3	설비 사진4

[서식 3]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 클린사업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완료일자	20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급 결정액	선금 신청액	채권확보방법		
☐ 클린사업(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수수료 없음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시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서식 4] 고위험개선 사업 자율신청품목 지원 타당성 검토서

고위험개선 사업 자율신청품목 지원 타당성 검토서			
신청자명	000	사업장명	0000
신청품목명	고정형 연삭기	해당과정	자동차부품 1차 가공
양산품/공사품	☒ 양산품 ☐ 공사품	검토자	000
지원 품목 적합성	지원 적합성	☒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 보완 ※ 조건부, 부적합 또는 보완사유	
	산안법 또는 규칙 근거조항 (해당 법령)	☒ 해당(87 조) ☐ 미해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법·규칙 준수여부	☐ 준수 ☒ 미준수	
	안전조치기준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안전인증 등 대상 여부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비대상	
	가격확인	신청금액	000원
현장 방문 확인 결과 (도입계획서 및 사진과 비교)	방문일	2024년 0월 0일	
	방문주소	00광역시 00구	
	투자공정 일치여부	☒ 해당 ☐ 비해당	
	재해유형 보유여부	☐ 끼임 ☐ 떨어짐 ☐ 부딪힘 ☒ 기타(물체에 맞음)	
	위험요인 보유여부	☒ 보유 ☐ 미보유 (위험요인: 자율안전확인미신고, 방호덮개 미설치(분실))	
	개선방안 적정여부	☒ 적정 ☐ 부적정 ☐ 조건부 적정	
조건부 적정시 보완사항			
검토자 판단결과	☒ 적정 ☐ 부적정		
	(기타의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 렾 법 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참고 1

'24년 고위험개선 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 ① '23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③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장별 예측 위험도 - 산재발생 위험률 0.95점 이상인 기업
④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

1 개별점수 산정

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10점	
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	25점	사고사망만인율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
③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점	
④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근로자 1명당 2점) 장년근로자(만55세이상), 장애인, 외국인, 청년(만15~29세)	10점	
⑤ 고용위기 지역('24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5점	
⑥ 「산단대개조」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5점	
⑦ 다품목 신청 사업장 * 품목 1개 당 2점(최대 10점)	10점	품목코드별 점수 부여
■ 자율활동 우수항목		
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10점	각 5점씩 -> 2점씩 단,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 10점으로 한정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만 점수 부여
⑨ 노사문화 우수기업, ⑩ 강소기업, ⑪ 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⑫ NCS 기업활동 우수사례 선정기업, ⑬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⑭ 일자리 으뜸기업 ⑮ 일터혁신 우수기 업(인증) ⑯ 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⑰ 산학협력 우 수기업(인증) ⑱ 여름휴가보상 우수기업	10점	
⑨ 상생(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10점	'23~'24년 참여업체
⑩ KOSHA-MS 인증,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	10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 가점항목(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	가점(+30점)	• 일선기관별 필요 시 수립
계		

④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내 인원(사업주 포함)에 대해 점수 부여.

단, 장애인은 별도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⑧은 인증(정)서 및 대상명단(①~②, ④~⑦, 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인증기간 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점수 부여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책임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책임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책임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책임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소기업/초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_____ 법인등록번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대표자명 : _____

주소(본점) : _____

유효기간 : 0000.00.00. ~ 0000.00.00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주소 : _____

본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소기업촉진 및 관리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에 관하여 유의)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지급보증보험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으로 적용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4.9.30.(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증기간: '24.9.30. ~ '28.9.29.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작성 예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_____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 _____	보험료
보증기간	2024년 9월 30일부터 2028년 9월 29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용보험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_____

출원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2024년 9월 30일부터 2028년 9월 29일까지

참고 4

하자보증보험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4.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4.6.15. 경우
'24.6.15. + 3년 2개월 => '24.6.15. ~ '27.8.14.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4.6.1. 발행 시 '24.6.15.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4.6.1. ~ '27.8.14.
- ▶ 피보험자: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작성 예시>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4년 6월 15일 ~ 2027년 8월 14일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금액 계약금액 보증금율 호지한 산정방법 보통약관 특별약관 사실 실습 세화 교육 사실 장비 제작 운송 현장 설치 2024년 6월 15일 ~ 2027년 8월 14일 30%		

참고 5

보조금 지원 절차별 제출서류

제출서류	단계	지원 신청	컨설팅 후	선금급 신청	투자완료	비고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서식1]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					[서식2]
①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견적서	●					
제품 설명자료(카탈로그 등)	●					
자율신청품목 안전 인증(확인)서 사본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50인 이상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참고2] 해당 시
우선지원 선정 증빙자료 (강소기업, 일터혁신 우수기업 등)	●					해당 시
②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사업자등록증			●			
③추가 요청 증빙자료			●			해당 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서식3]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	●	
(양산품)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5건				●		
(공사품) 원가계산전문기관 발행 원가계산서						
④지급보증보험 증권				●	●	[참고3]
원가계산(검토) 보고서				●	●	
실거래 입증서류					●	
⑤하자보증보험증권					●	[참고4]
안전인증, 검사 등 관련 서류					●	해당 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서식5]
개선완료 증빙 사진					●	

-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②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5건 등
- ③ 컨설팅 담당자(공단직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일체
- ④ 지급보증보험증권은 약정일로부터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이상) 제출
※ 보험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